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 회장 주재로 지난 4월 12일(제7회), 4월 28일(제8회), 5월 10일(제9회)에 각각 개최되어, 협회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회

- 개혁추진 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승인의 건
 - 다음 이사회에 세부사용 계획서(명세)를 첨부하여 재상정 하기로 하고 유보함.
-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사용 승인의 건
 - 다음 이사회에 세부사용계획서(명세)를 첨부하여 재상정 하기로 하고 유보함.
- 사용년한 경과비품처분 승인의 건
 - 감사에게 확인한 후 처분토록 승인함.
- 직원 가호봉 부여 승인의 건
 - 윤길용 직원에게 일반기능 1급 가1호봉을 부여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회관사무실 사용 조정(안)에 대한 협의
 - 회관사무실 사용 조정(안)(1층: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2층:서울건축사회, 3,4층:본부)대로 시행하기로 협의함.
- 협회 이미지 광고문(안)에 대한 협의
 - 부회장과 홍보위원장이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문(안) 제 1,2안을 참고로 제3안을 작성하기로 협의함.
- 건축자재업체 및 협회공로자에 대한 명예회원 영입계획(안)에 대한 협의
 - 정관의 명예회원과 상이한점이 있으므로, 명예회원을 창조회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영입하기로 협의함.

● 제8회

- 개혁추진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승인의 건
 - 개혁추진전담기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비에서 1천3백9십2만4천원을 사용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승인의 건
 -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비에서 1천2십2만3천2백원을 사용하기로 승인함.
-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원안 중 제5조 폐업환불금 명칭을 폐업위로금으로 개정하고 지급기준표는

5년 이하 1백만원, 10년이하 1백5십만원, 10년초과 2백만원으로 지급금액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안)만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시행일은 '95. 5. 1로 하되, 나머지(안)은 폐기함.

- 본 협회 업무에 대한 정책 자문위원회 위촉의 건
 - 서형을 정책고문, 최찬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되, 임기는 현 회장 재임기간으로 하며, 정책고문에게는 월 2백만원,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월 1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족된 예산은 추경하기로 결의함.
- 창립30주년기념 전국건축사대회 행사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95. 9. 28(목)~29(금)까지 양일간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창립30주년 기념 행사 및 전국건축사대회 행사를 개최하기로 승인하고, 주요계획을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오스트리아 건축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
 - 본 협회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협의함.
- 한·몽교류 협력에 대한 협의
 - 다음 이사회에 부의하여 정식으로 다루기로 협의함.
-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의
 - 법제위원회에 위임함.
- 건축설계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세칙(안) 및 건축설계 하도급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협의
 - 제출기한이 4월 29일까지로 촉박하므로 법제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초안을 제출하기로 협의함.
- 건축개혁(안) 설명회 일정에 대한 협의
 - 이직 건축개혁(안)이 미확정이므로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협의함.

● 제9회

- 한·몽교류 협력 및 대표단 구성 승인의 건
 - 한·몽교류를 위한 협정서 체결을 위하여 몽고를 방문하기로 하고, 대표단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함. 또한, 몽고방문 3일전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협의하기로 함.
- 건축개혁(안) 승인의 건
 - 건축개혁(안)중 정관개정(안)은 제도개선위원회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고, 예산관계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은 이종만, 이종관, 김규태, 임인혁이사 및 개혁추진실무위원들이 협의하며,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의
 - 원안대로 협의함.
- 건축개혁(안) 설명회 일정에 대한 협의
 - 설명회를 하지 않기로 협의함.
- 예산심의 방법에 대한 협의
 - 이종만, 이종관, 김규태, 임인혁이사